

재외투표안내문



▶ 투표장소 및 기간

- 투표장소 : 재외공관(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대체장소)
 - 투표기간 : 12.5(수) ~ 12.10(월)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
 - 투표시간 :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~ 오후 5시
- ※ 재외선거관리위원회별 투표장소 및 기간은 11.29 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(ok.nec.go.kr), 외교통상부(www.mofat.go.kr) 및 각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▶ 투표방법

-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, 투표용지(1 매)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.
- 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원하는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.
※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- ③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합합니다(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).
- ④ 봉합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.

▶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(①, ②중 하나, 미지참시 투표할 수 없음)

- ① 여권, 주민등록증, 공무원증,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
- ②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(외국인등록증 등)

▶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-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합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
-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
-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
-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- ⊕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
- ⊕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
-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

※ 제18대 대통령선거 「후보자 정보」 및 「후보자 공약」은 후보자등록 마감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(www.nec.go.kr 또는 ok.nec.go.kr)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재외투표안내문

(국적확인서류 제시 대상자용)

※전자우편으로 신청한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국적확인서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.



▶ 투표장소 및 기간

- 투표장소 : 재외공관(공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대체장소)
- 투표기간 : 12.5(수) ~ 12.10(월) 기간 중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
- 투표시간 :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8시 ~ 오후 5시
 - ☞ 재외선거관리위원회별 투표장소 및 기간은 11.29 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(ok.nec.go.kr), 외교통상부(www.mofat.go.kr) 및 각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
▶ 투표방법

- ① 재외투표소에 가서 국적확인서류의 원본(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함)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국적 및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 수령 확인을 하고, 투표용지(1 매)와 회송용 봉투를 받습니다.
- ②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자신이 원하는 1 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해당 기표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다음 기표소를 나옵니다.
 - ※ 기표용구는 기표소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- ③ 회송용 봉투를 양면테이프로 봉합합니다(봉투에 성명은 기재하지 않습니다).
- ④ 봉합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됩니다.

▶ 재외투표소에 갈 때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것 (미지참시 투표할 수 없음)

-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의 원본(단,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)
- ☞ 재외투표관리관이 공고한 국적확인서류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(ok.nec.go.kr), 외교통상부(www.mofat.go.kr) 및 각 재외공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.
 - ☞ 신분증명서는 여권, 주민등록증, 공무원증,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또는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주국의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명서(외국인등록증 등)를 의미합니다.

▶ 다음의 경우는 무효가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재외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용지 또는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
- 기표 후 회송용 봉투를 봉합하지 아니한 채로 투표함에 투입하여 발송된 것
-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
- 2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
-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
-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
-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
-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